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5 |
|----------|-----|

제출년월일 : 2000. 8.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99.2.8), 동법시행령('99.8.6), 동법시행규칙(2000.4.3)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용어의 정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방법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
-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일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함 (안 제2조, 제6조 내지 제8조)
- 라. 봉투판매소 표시부착 의무를 삭제함 (안 제10조)
- 마.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 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안 【별표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표준조례안[도 환경67501-1233('99. 11. 25)호] 공문 사본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제5호의 가목”을 “제3호의 라목”으로 하며,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3.“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호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로, “날짜”를 “일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중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12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중 제2호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란의 제2호중 “탈수·건조·발효·발효 건조·소멸화”를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의 설치·가동시부터 시행한다.

<별지1>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 적용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만원)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이상 |
| 폐기물 관리법 |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 5 | 10 | 20 |
| |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5 | 10 | 20 |
| |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관련) | 20 | 50 | 100 |
| | | 10 | 20 | 30 |
| | | 30 | 50 | 100 |

<별지2>
【별지 제1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 | | | | 처리기한 즉시 | |
|--|--|---------------------------|----------------|--------------------|--------------|----------------|--|
|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사업장 규모 |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 | | | | | |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 | | | | | | |
| 자가감량 처리계획 |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상량 | | | kg/월 | | | |
| | 감량 처리 | | | 부산물 처리 | | | |
| | 처리방법 kg/일 |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kg/일 | 처리량 kg/일 | 부산물 발생량 kg/월 | 처리방법 kg/월 | 처리자 (전화) | |
| 재활용량 kg/월 | | |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 | | | |
| 위탁재활용 계획 | 위탁 재활용량 kg/월 | 재활용방법 | | | | | |
| | | 위탁업소명 | 업종 | 위탁업소주소· 전화번호 | | | |
| 영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질·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 | | | | | | |
| 상호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전화:) | | | |
| 처리구분 | 처리예상량 | 처리방법 | 설치 신고일 | 재활용 장소 | 위탁 업소명 | 위탁업소 주소(전화) | |
| 자 가 감 량 | kg/월 | | | | | | |
| 자기 재활용 | kg/월 | | | | | | |
| 위탁 재활용 | kg/월 | | | | | | |
| 영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질·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주시장 (인) | | | | | | | |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신고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 | | |
| 사업장 규모 |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 | 명 | | | | | |
| |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m ² | | | | | |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 m ² | | | | | |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m ² | | | | | |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 수 : | 실 | | | | | |
|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 kg/년 | | | | | | | |
| 처리 실적 | | | | | | | |
| 자가처리 | 감량처리 | 처리능력 (kg/일) | 연간처리량 | 부산물 처리 | | | |
| | | | | 부산물 발생량 | 처리방법 | 처리자 (전화) | |
| 재활용 | 자가재활용의 경우 | | 위탁 재활용의 경우 | | | | |
| | 재활용량 | 재활용 방법 | 위탁량 | 재활용 방법 | 업체명 | 업종 | 주소 전화 |
| | | | | | | | |
|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빛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제출자 : | | | | | (서명 또는 날인) | | |
| 영주시장 귀하 | |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현 행 | 개 정 |
|---|---|
|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6조제3호</u>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 ----- ----- <u>제6조제3호</u> ----- ----- ----- ----- |
|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1.-----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
| 2.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 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3.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 현 행 | 개 정 |
|---|--|
| <p><u>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u>7일이내에</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u>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p> <p>-----</p> <p>-----</p> <p>-----</p> <p>1. -----</p> <p>-----</p> <p>--- <u>30일이내에</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
| <p>2.<생 략></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생 략></p> <p>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u>법 제63조제2항제2호</u>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⑥<생 략></p> | <p>2.<현행과 같음></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 <u>법 제63조제3항제2호</u> -----</p> <p>-----</p> <p>③~⑥<현행과 같음></p> |
| <p>제10조(전용봉투의 판매)</p> <p>①<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 【별표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p> | <p>제10조(전용봉투의 판매)</p> <p><현행과 같음></p> <p>②<삭 제></p> |

| 현 행 | 개 정 |
|--|---|
| <p>제12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범 <u>제16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 <u>제16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범 <u>제16조제2항</u>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범 <u>제63조제2항제3호</u>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 <p>제12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범 <u>제12조</u> ----- ② ----- ----- ----- <u>재활용하기</u>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 <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 ----- ----- <u>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u> ----- ----- <u>- 범 제63조제1항제1호</u> -----</p> |

| 현 행 | 기 정 |
|---|---|
| <p>제14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생 약></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14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

| 현 행 | 개 정 |
|---|---|
| <p>제15조(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u><신설></u></p> | <p>제15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 ----- ----- <삭제>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

| 현 행 | | |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 |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자(명성) | | 사업자등록번호 | | 신고자(명성)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고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 인 주소(사업장)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규모 | □ 절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 절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점 : 객석·객실면적 합계 : m ² | □ 음식점 : 객석·객실면적 합계 : m 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텔·온도 : 객실수 : 실 | □ 호텔·온도 : 객실수 :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 | |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상량 : kg/월 | | | |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상량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가 감 량 처 리 방 법 계 획 | 감량처리 | | 부산물처리 | | 자 가 감 량 처 리 방 법 계 획 | 감량처리 | | 부산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 | 처리 | 설치신 | 처리량 | | 처리 | 처리 | 설치신 | 처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법 | 능력 | 고일자 | 부산물 | | 방법 | 능력 | 고일자 | 부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가 제 활 용 계 획 | kg/일 | kg/월 | kg/일 | (전화) | kg/일 | kg/월 | kg/일 | (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활용량 | 제활용방법 | 제활용장소 | | 제활용량 | 제활용방법 | 제활용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g/월 | | |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탁 제 활 용 계 획 | 위탁 제활 용방 법 | 위탁 업소명 | 업종 | 위탁업소주소 전화번호 | 위탁 제활용 방법 | 위탁 업소명 | 업종 | 위탁업소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g/월 | | |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제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주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대표자</th> <th colspan="2">사업장주소</th> <th colspan="3">(전화:)</th> </tr> </thead> <tbody> <tr> <td>처리여상장</td> <td>처리방법</td> <td>설치신</td> <td>제활용</td> <td>위탁</td> <td>위탁업소주소</td> </tr> <tr> <td>구분</td> <td>방법</td> <td>신고일</td> <td>장소</td> <td>업소명</td> <td>주소(전화)</td> </tr> <tr> <td>작가</td> <td>kg/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감량</td> <td>kg/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기</td> <td>kg/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제활용</td> <td>kg/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위탁</td> <td>kg/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제활용</td> <td>kg/월</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 | | | | | | | 번호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전화:) | | | 처리여상장 | 처리방법 | 설치신 | 제활용 | 위탁 | 위탁업소주소 | 구분 | 방법 | 신고일 | 장소 | 업소명 | 주소(전화) | 작가 | kg/일 | | | | | 감량 | kg/월 | | | | | 자기 | kg/월 | | | | | 제활용 | kg/월 | | | | | 위탁 | kg/월 | | | | | 제활용 | kg/월 | | | | |
| 번호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 (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여상장 | 처리방법 | 설치신 | 제활용 | 위탁 | 위탁업소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방법 | 신고일 | 장소 | 업소명 | 주소(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가 | kg/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량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기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활용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활용 | kg/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제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영주시 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 | 개 정 | |
|--|--|---|--|
|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서식 <생 략> <작성요령> 1.<생 략> 2.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김량방법은 <u>활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u> 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생 략> | | 【별지 제2호서식】 서식 <현행과 같음> <작성요령> 1.<현행과 같음> 2.----- ----- <u>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u> . 3.<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 |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
| 신고자(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 신고자(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
| 사업장 규모 □질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용식점 : 객석·객실면적 합계 : m ²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 | 사업장 규모 □질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용식점 : 객석·객실면적 합계 : m ²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²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²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 |
|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 kg/년 처리실적 | |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 kg/년 처리실적 | |
| 자가 처리 감량처리 처리률 연간 처리량 생량 kg/일 | | 부산물처리 처리률 연간 처리량 생량 kg/일 | |
| 자가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 |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주소 전화 | |
| 재활용 재활용방법 위탁량 위탁방법 주소 전화 | | 자가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위탁방법 주소 전화 | |
|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영주시장 귀하 | |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날짜 : (서명 또는 날인) 영주시장 귀하 | |

9330
1999. 11. 22. 16:08
FAX

관인생략

경상북도

우 702-702 대구·북구·신격동 1445-3 / 전화(053)950-3514 / 전송(053)950-3519
 환경관리과 과장 권수광 사무관 이진관 담당자 손철원

문서번호 환경 67501-1410
 시행일자 99. 11. 22 (3년)
 (승개예부) 공개
 발음 시장·군수
 참조 환경보호(청소위생·폐기물) 과장

| | | | |
|-----|-------|-----|-------|
| 설명 | 1410 | 지시 | 22/10 |
| 점 | 일자 시간 | 결 | 재 |
| 수 | 번호 | · | · |
| 처리과 | 환경보호 | 공 | 답 |
| 담당자 | 우도하 | 답 | |
| 실사자 | | 실사일 | |

제 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 개정(안)서울

- 환경부 생폐 67500 - 1410(99.11. 22)호와 관련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99. 8. 9)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개정되어 별임과 같이 시달하니 귀시·군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라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조례개정 완료후 개정조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농·축산가 등에서 자원화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관할 행정구역내 인간자원화 시설 또는 농·축산가로 반입될 경우 신고서 반려등 비협조로 자원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관할 시·군에서는 농·축산가의 경쟁력 확보 및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위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1부
 *불임 조례준칙 활용(<http://www.mc.go.kr/> →폐기물자원→정부시책 및 제도 →폐기물자원화) 끝.

경상북도지사

전결 환경관리과장 권수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전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전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
| 음식물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 적용법 | 부 과 항 목 | 부과금액(만원)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이상 |
| 폐기물 관리법 |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 | | |
| | |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 기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5 | 10 |
| | |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 5 | 10 |
| |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 | | |
| | |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20 | 50 |
| | |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 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0 | 20 |
| |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 | | |
| | | | 100 | 300 |
| | | | | 500 |

< 별지 제1호서식 >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 | | | 처리기한 즉시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전화 :) | | | |
| 사업장 규모 |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 | | | | 명 |
| |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 | | m ² |
| |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 | m ² |
| |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 | m ² |
| |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 | | | 실 |
|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계획 | | | | | | |
|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 | | kg/월 | | | |
| 자가감량 처리계획 | 감량 처리 | | | | 부산물 처리 | |
| | 처리방법 | 처리능력 | 설치신고일자 | 처리량 | 부산물 발생량 | 처리방법 |
| | kg/일 | | kg/일 | kg/월 | | |
| 자기재활용 계획 | 재활용량 | | 재활용방법 | | 재활용장소 | |
| | kg/월 | | | | | |
| 위탁재활용 계획 | 위탁 재활용량 | 재활용방법 | 위탁업소명 | 업종 | 위탁업소 주소·전화 | |
| | kg/월 | | |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 | | | (서명또는날인)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 | | | | | |
| 상호 | 대표자 | | | 사업장주소 | (전화 :) | |
| 처리구분 | 처리예상량 | 처리방법 | 설치신고일 | 재활용장소 | 위탁업소명 | 위탁업소주소(전화) |
| 자기감량 | kg/월 | | | | | |
| 자기재활용 | kg/월 | | | | | |
| 위탁재활용 | kg/월 | | |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⑧ | |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 사업장명 : | | | (단위 : kg) | | | | |
|--------|-----|--------|-----------|--------|------|-------|------|
| 연월일 | 발생량 | 자가감량 | | | 재활용 | | |
| | | 자가감량방법 | 자 가 처리량 | 처리량 누계 | 재활용량 | 재활용방법 | 재활용자 |
| | | | | | | | |

< 작성요령 >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 | | | | | |
|------------------------------|--|-----------|---------------------|-----------|------------|------|-----------|
| 제 신 출 고 자 인 | 상호(명칭)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대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사업장) | | (전화:) | | | | |
| 사업장 규 모 |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 | | | | | |
| |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 | | kg/년 | | | |
| | 처 리 실 적 | | | | | | |
| | 자가처리 | 감량처리 | 처리시설 능 (kg/일) | 연간 처리량 | 부산물처리 | | |
| | | | | | 부산물 발생량 | 처리방법 | 처리자 |
| 재활용 | 자가재활용의 경우 | | 위탁재활용의 경우 | | | | |
| | 재활용량 | 재활용 방법 | 위탁량 | 재활용 방법 | 업체명 | 업종 | 주소· 전화 |
| | | | | | | | |
| 위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관 련 법령 (발췌)

[폐기물관리법] — 개정 '99. 2. 8 법률 제5865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3.“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7.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책무)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①~② <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삭제('99.2.8)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⑧ <생략>

제41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용기 등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과 회수 및 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

리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3. 폐기물처리업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6. 제4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42조(휴업·폐업 등의 신고)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 제1호 및 제61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안제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99. 2. 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99. 2. 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⑦<생략>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개정 '99. 8. 6 대통령령제16,506호

제2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생 략>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개정 2000. 4. 3 환경부령 제90호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 <생 략>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생 략>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6조제1항관련)

1~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다. <생 략>

라. 처리의 경우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금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종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 업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마)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2)(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하여야 한다

(나)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 8. <생 략>

[사료관리법]

제9조(제조업의 등록등)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삭제<'94.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99.3.31>

⑦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의 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증개정
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61호(2000년 7월 18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0년 7월 18일 ~ 2000년 8월 11일(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35호
- 의 안 명 :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2. 제안이유

폐기물 관리법('99. 2. 8), 동법시행령('99. 8. 6), 동법시행규칙 (2000. 4. 3)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용어의 정의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방법등을 정비함
(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
-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일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함 (안 제2조, 제6조 내지 제8조)
- 라. 봉투판매소 표시부착 의무를 삭제함 (안 제10조)
- 마. 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 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안 【별표2】)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영주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99. 2. 8), 동법시 행령('99. 8. 6), 동법시 행규칙(2000. 4. 3)이 개정되었으며,
- 경상북도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환경 67501-1223]이 시달되어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 법령의 인용조항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통한 처리비용의 절감과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의 촉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2000. 9.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섭